

아동 학대 신고

신고 의무자 가이드



NATHAN J. HOCHMAN

지방 검사

누가 신고해야 합니까?

아동과 접촉이 있거나 보호 및 감독의 책임이 있는 특정 인물은 주법에 따라 아동 학대 및 방임이 명백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신고 의무자는 각자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의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합의하여 한 명을 신고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문 자격이나 자격증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주법에 명시된 의무 신고자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 교사 보조, 보조 교사 교육 보조
- 학교 행정 담당자, 교장, 교감, 학장, 학교 출석 및/또는 아동 복지 감독관, 학생 인사 공인 직원, 공립학교 임직원, 학교 기반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직원,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서 코칭에 관여하는 운동 코치, 보조 코치 또는 대학원 조교, 공립 또는 사립 학교에 고용된 운동 행정 담당자 또는 운동 감독
- 아동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캘리포니아 교육부 또는 카운티 교육청 직원
- 내과 의사, 레지던트 또는 인턴, 발 치료사, 외과 의사, 검시관, 법의학자, 척추지압사, 검안사, 면허 간호사,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 미성년자의 성병 또는 기타

질환을 치료하는 주 또는 카운티 공중 보건 직원

- 임상 사회복지사, 인턴 및 실습생을 포함한 결혼, 가족 및 아동 치료사/상담사, 정신과 의사, 공인 심리 보조원 또는 알코올 및 약물 상담사
- 거주 보호 및 그룹 홈 직원을 포함한 보육 기관 직원, 데이 캠프 행정 담당자, 데이 케어 및 커뮤니티 케어 시설 직원, 관리자 또는 면허 보유자, 위탁 부모,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교사, 허가 기관 또는 청소년 센터,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센터가 고용한 허가 담당자 또는 평가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직원, 아동과 직접 접촉하고 감독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관리자 또는 직원
- 양육비 이행관리원 또는 조사관, 아동 방문 감독관, 카운티 복지 직원, 법원 지정 특별 대리인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CASA) 프로그램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재가 서비스 제공자, 공공 지원 복지사, 사회 복지사
- 지방 검찰 수사관, 경찰관, 가석방 담당관, 보호 관찰관, 학군 경찰관 또는 학교 보안관, 경찰, 보안관 또는 보호관찰 부서의 모든 직원
- 응급 의료 기술자, 소방관(자원봉사자 제외), 구급대원
- 유기 동물 처리관, 동물 보호 관리원
- 목사, 신부, 랍비 등 교회나 사찰 또는 공인된 교단이나 단체의 종교인, 직원을 포함한 성직자, 성직자 구성원의 기록 관리자
- 상업용 필름 및 사진 인화 처리업체 및 처리업체 직원
- 상업 컴퓨터 기술자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의심 신고

아동 보호 핫라인

(800) 540-4000

캘리포니아 내 무료 전화

캘리포니아 외 지역

(213) 639-4500

TDD (청각 장애)

(800) 272-6699



범죄 피해자 생존 지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 검찰청
피해자 지원국

da.lacounty.gov/victims

(800) 380-3811



여기를 스캔하여 모든 팸플릿을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보고해야 합니까?

신고 의무자는 아동(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다음과 같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성추행, 성폭력, 강간, 근친상간 또는 성적착취를 포함한 성적 학대
- 타박상, 베인 상처, 찰과상, 화상, 골절 또는 기타 외상성 상태를 초래하는 체벌과 같은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 신체적 학대
- 보호자가 아동에게 충분한 음식, 의복, 주거, 의료 서비스 또는 감독을 제공하지 못하여, 그 결과 아동이 심각한 신체적 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혹한 대우, 위협, 굴욕 및 박탈감을 포함한 정당화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정서적 학대
- 실제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자가 아동의 신체 또는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를 포함한 위험 가중

신고 의무자 보호

신고 의무자의 고용주는 어떤 방식으로든 신고를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신고로 인해 직원을 제재하거나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당하는 경우, 주 정부는 신고자의 법적 방어 비용으로 최대 \$50,000를 배상합니다.

주법에는 신고 의무자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신원은 아동 보호 및 법 집행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 특정 권한을 받은 당사자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범죄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신고 의무자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

1단계:

아동이 학대 또는 방임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의무자는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전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합리적 의심”은 경험 및/또는 교육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사람이 관찰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학대 또는 방임을 의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현지 법 집행 기관이나 (800) 540-4000 번으로 24시간 아동 보호 핫라인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 신고에는 신고자의 이름, 아동의 이름과 위치, 학대 또는 상해의 종류와 정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2단계:

신고 의무자는 전화 신고 후 36시간 이내에 지정된 법무부 양식 SS 8572에 따라 아동 학대 의심 신고서 (Suspected Child Abuse Report, SCAR) 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에 전화로 신고한 경우 우편으로 해당 기관의 사업장에 서면 신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핫라인으로 전화 신고를 한 경우 서면 신고서를 아동가족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DCFS)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 양식과 지침은 DCFS 웹사이트 mandreptla.org 를 방문하십시오.

서면 SCAR은 다음 주소로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DCFS, 1933 S. Broadway, 5th Fl., Los Angeles, CA 90007.

SCAR 양식은 다음 주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oag.ca.gov/childabuse/forms
- mandatedreporterca.com